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외국인환자 대상 비대면 진료 법제화 등〉

■ 이수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5770호)

2026. 3.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4
1. 의료 해외진출 신고 대상자 확대	4
가. 개정안의 내용	4
나. 검토의견	6
다. 관계 기관 의견	12
2. 외국인환자 비대면 진료 근거 신설	13
가. 개정안의 내용	13
나. 검토의견	16
다. 관계 기관 의견	21
3.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실태조사 근거 신설	22
가. 개정안의 내용	22
나. 검토의견	22
다. 관계 기관 의견	25

I. 개요

1. 이수진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5770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이수진의원 등 11인
- (2) 제 안 일 : 2025. 12. 30.
- (3) 회 부 일 : 2025. 12. 31.

나. 제안이유

외국인환자 유치 제도가 도입된 이후 2024년에 사상 최고로 외국인 환자 방문객 수가 117만명을 기록하여 2023년 60만명에서 거의 두 배가 증가할 정도로 한국 의료에 대한 수요와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다만, 외국인환자의 경우 국내 체류 기간에 제한이 있어 국내 의료 이용 사전·사후관리가 중요하나, 현행법상 국내·외 의료인 간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의료지식이나 기술 지원, 환자의 건강 또는 질병에 대한 상담·교육만 허용하고 있어 국내 의사가 비대면으로 외국인환자를 직접 진료함으로써 외국인환자에 대한 국내 진료 사전·사후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한편 2025. 12. 23. 개정·공포(법률 제21238호)된 「의료법」이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함에 따라 외국인환자에 대한 비대면 진료도 의료해외진출법 개정을 통해 명문화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인환자의 특성에 맞는 비대면

진료의 범위, 비대면 진료 수행기관 및 그 절차, 방법 등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의료 해외진출을 하려는 의료기관 개설자(개인 또는 법인)에 한하여 의료 해외진출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의료기관 개설자 외에도 의료 해외진출 주체가 다양해짐에 따라 신고 대상 확대를 통한 체계적인 관리와 적절한 지원정책 수립이 필요한 상황임.

아울러 증가하고 있는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의 성과, 운영 현황 등 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1) 의료 해외진출 신고 대상을 의료기관 개설자뿐만 아니라 「민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상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 확대함(안 제4조제1항).
- 2)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소속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이 유선·무선·화상통신,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외국인환자에 대한 사전·사후관리를 위하여 비대면 진료(지속적 관찰, 상담·교육, 진단 및 처방)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법」과 달리 외국인환자 비대면 진료는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외국인환자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구축·운영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의2 신설).
- 3)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3 신설).

- 4) 외국인환자 비대면 협진 및 비대면 진료의 방법과 절차 등을
위반한 경우 시·도지사가 유치 의료기관 또는 유치사업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제1항제8호).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의료 해외진출 신고 대상자 확대

가. 개정안의 내용

□ 현행법에서는 「의료법」 제3조¹⁾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의 개설자가 의료 해외진출²⁾을 하려는 경우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민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하

1)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①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의원
- 나. 치과의원
- 다. 한의원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신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병원
- 나. 치과병원
- 다. 한방병원
- 라.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마. 정신병원
- 바. 종합병원

2)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료 해외진출”이란 해외에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가. 국외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 나. 국외 의료기관의 수탁 운영 또는 운영에 대한 컨설팅
- 다. 국외 의료기관에 대한 보건의료인 등 관련 종사자의 파견
- 라. 국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 대한 의료기술 또는 정보시스템 등의 이전
- 마. 국외에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제공
- 바. 그 밖에 국외에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료 해외진출의 범위)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국외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의료기술을 지원하거나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비영리법인”이라 한다)이나 「상법」 제170조³⁾에 따라 설립된 회사 (이하 “회사”라 한다)가 의료 해외진출을 하려는 경우에도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4조(의료 해외진출의 신고) ① 의료 해외진출을 하려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신설> <신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 「의료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그 정관에 의료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 ⑥ (생략)	제4조(의료 해외진출의 신고) ① ----- -----다음 각 호의 자----- ----- ----- 1.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자 2. 「민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3. 「상법」 제170조에 따라 설립된 회사 ② 제1항제1호----- ----- ----- ----- ③ ~ ⑥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3) 「상법」

제170조(회사의 종류) 회사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5종으로 한다.

나. 검토의견

□ 현행법에서는 의료 해외진출⁴⁾을 하려는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면서(제4조),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관의 개설자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제22조),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 해외진출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음(제29조).⁵⁾

□ 개정안은 의료기관 개설자 외에도 비영리법인이나 회사가 의료 해외진출을 하려는 경우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4)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료 해외진출”이란 해외에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가. 국외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 나. 국외 의료기관의 수탁 운영 또는 운영에 대한 컨설팅
 - 다. 국외 의료기관에 대한 보건의료인 등 관련 종사자의 파견
 - 라. 국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 대한 의료기술 또는 정보시스템 등의 이전
 - 마. 국외에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제공
 - 바. 그 밖에 국외에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5)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료 해외진출의 신고) ① 의료 해외진출을 하려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 「의료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그 정관에 의료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제4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의료기관의 개설자에게 의료 해외진출의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 절차, 시기 및 제5항에 따른 확인증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시정명령)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 해외진출을 하려는 의료기관이 제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5조를 위반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2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의료 해외진출 신고를 허위로 하거나 제2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의료 해외진출의 유형에 ‘국외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이나 ‘국외 의료기관의 수탁 운영’뿐 아니라 ‘관련 종사자의 국외 파견’이나 ‘정보시스템 이전’ 등이 모두 포함되고, 현장에서도 다양한 주체가 여러 형태로 의료 해외진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재를 고려하여 의료 해외진출의 전체적인 현황 파악과 성과 분석을 용이하게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참고로, 정부가 2023년 6월 발표한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 수출 활성화 추진방안」과 2025년 8월 수립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2025년 시행계획」에서는 의료 해외진출의 형태가 다양화되고 있으나 현행법에 따른 신고 대상자는 의료기관 개설자로 국한되어 있어 현황 파악과 성과 분석이 제한되고 정부의 의료 해외진출 육성·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음.⁶⁾

< 의료 해외진출 유형별 누적 신고 현황(2016~2024) >

(단위: 건, %)

구분	계	의료기관 개설·운영	운영 수탁 및 컨설팅	종사자 파견	정보시스템 이전	기타
건수	249	106	85	31	7	20
비율	100	42.6	34.1	12.4	2.8	8.1

자료: 보건복지부

6) 관계부처 합동,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 수출 활성화 추진방안」, 2023년 6월.; 관계부처 합동,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2025년 시행계획」, 2025년 8월.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다음 사항이 논의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첫째, 비영리법인이나 회사에 대한 의료 해외진출 신고의무 부과는 의료 해외진출을 하려는 비영리법인·회사의 행정부담을 가중하는 규제적 측면이 고려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둘째, 국가는 현행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의료 해외진출을 신고한 의료기관에게 「한국수출입은행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대상 자금공급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금융 또는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는데,⁷⁾

개정안에 따라 의료 해외진출 신고 대상에 포함되는 비영리법인이나 회사에 대하여도 국가가 금융 또는 세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입법정책적 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제17조제1항을 함께 개정할지 여부를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셋째,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개설자의 의료 해외진출 신고를 수리한 경우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하고(제4조제5항), 의료 해외진출을 신고한 의료기관의 장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제18조의2), 의료 해외진출을 하려는 의료기관이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는데(제22조제1항),⁸⁾

7)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금융 및 세제 지원) ① 국가는 의료 해외진출 지원을 위하여 제4조에 따라 신고한 의료기관에게 「한국수출입은행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대상 자금공급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금융 또는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다.

8)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료 해외진출의 신고)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제4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의료기관의 개설자에게 의료 해외진출의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안에 따라 비영리법인·회사가 의료 해외진출 신고 대상에 포함될 경우 이들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신고확인증 발급이나 협조 요청 또는 시정명령이 가능하도록 제4조제5항과 제18조의2 전단 및 제22조제1항을 함께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넷째, 현행법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외국에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한 국외법인을 통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외국의료기관⁹⁾이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07조에 따라 개설되는 의료기관¹⁰⁾(이하 “외국의료기관”이라 한다)에 투자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¹¹⁾

제18조의2(협조 요청)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제4조에 따른 의료 해외진출 신고 의료기관의 장,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의 장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22조(시정명령)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 해외진출을 하려는 의료기관이 제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5조를 위반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9)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의 개설) ① 외국인 또는 외국인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상법」상 법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은 「의료법」 제3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의료기관의 종류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요양병원으로 한다.

1. 경제자유구역에 소재할 것
2.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
3. 그 밖에 자본금의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충족할 것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설된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에 따른 요양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

1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07조(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특례) ① 「의료법」 제3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을 말한다)이 설립한 법인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제주자치도에 의료기관(이하 “외국의료기관”이라 한다)을 개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의료기관의 종류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치과병원·요양병원·종합병원으로 한다.

④ 외국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과 「의료급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

11)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우회투자의 금지) 제4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외국에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한 국외법인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에 투자할 수 없다.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외국의료기관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07조에 따라 개설되는 의료기관

개정안에 따라 ‘비영리법인’ 및 ‘회사’의 의료 해외진출 신고가 의무화되고 이를 제도적으로 관리하게 될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와 같이 국외법인을 통하여 외국의료기관에 우회 투자하지 못하도록 금지할 것인지를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참고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는 각각 경제자유구역위원회(위원장 산업통상부장관)와 보건 의료 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장관)가 외국의료기관의 개설을 허가할지 여부를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¹²⁾ 자본의 흐름이나 투자관계 등을 개별적·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절차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점이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보건복지부는 비영리법인과 회사가 국외법인을 설립하여 외국의료기관에 우회 투자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한 입법례는 있지 아니하고, 현행법 제5조가 「국민건강보험법」 적용이 배제되는 외국의료기관을 우회 투자의 방법으로 개설·운영함으로써 건강보험 제도를 잠탈할 유인을 없애면서 의료법인의 수익이 국외법인을 경유하여 해외로 이전되어 의료기관 내부에 투자되지 아니하거나 자금 흐름의 추적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방지하려는 취지에서 규정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우회투자 금지 대상은 현행과 같이 ‘의료기관 개설자’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함.

1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의 개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국의료기관의 개설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07조(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특례) ③ 제1항에 따라 외국의료기관의 개설을 허가하거나 제2항에 따라 도조례를 정할 때에는 미리 보건 의료 정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그 심의를 마치고 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다섯째, 안 제4조제1항제3호는 “「상법」 제170조에 따라 설립된 회사”를 의료 해외진출 신고 대상으로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상법」 제170조¹³⁾에서는 ‘회사의 종류’가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의 5종임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회사의 의의’와 ‘회사의 성립’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한 같은 법 제169조와 제172조¹⁴⁾를 인용하는 방안이 논의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참고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나 「기업 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등에서 ‘기업’을 “「상법」 제169조의 회사로서 같은 법 제172조에 따라 성립한 회사”로 규정한 입법례가 있음.¹⁵⁾

13) 「상법」

제170조(회사의 종류) 회사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5종으로 한다.

14) 「상법」

제169조(회사의 의의) 이 법에서 “회사”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제172조(회사의 성립) 회사는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15)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업”이란 「상법」 제169조의 회사로서 같은 법 제172조에 따라 성립한 회사를 말한다. 다만, 「상법」 제614조의 외국회사 및 제617조의 유사외국회사는 제외한다.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업부설연구소”란 다음 각 목의 기업(이하 “기업”이라 한다)이 연구개발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운영하는 부설 연구기관으로서 제7조에 따른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 연구기관을 말한다.

가. 「상법」 제169조의 회사로서 같은 법 제172조에 따라 성립한 회사

다. 관계 기관 의견

□ (보건복지부) 수용

- 최근 의료 해외진출 주체가 의료기관 개설자에서 비영리법인, 민간 회사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할 수 있고, 신고대상 확대를 통하여 민간 차원의 해외진출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맞춤형 지원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됨.

2. 외국인환자 비대면 진료 근거 신설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¹⁶⁾의 개설자 또는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이하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인”이라 한다)가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국외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기술을 지원하거나 환자의 건강·질병에 대하여 상담·교육하는 ‘외국인환자 사전·사후관리’의 용어를 ‘외국인환자 비대면 협진’으로 변경하면서,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인이 유선·무선·화상통신·컴퓨터 등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외국인환자에 대한 사전·사후관리를 위하여 지속적 관찰, 상담·교육, 진단 및 처방하는 ‘외국인환자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외국인환자 사전·사후관리) ① 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 한의사(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의 개설자 및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사람에 한정한다)는 「의료법」 제33 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화상 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국	제16조(외국인환자 비대면 협진) ① -- ----- ----- ----- ----- ----- -----

16)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의료기관(이하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라 한다) 및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라 한다)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현행	개정안
외에 있는 의료인에게 <u>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외국인환자 사전·사후관리”라 한다)</u>를 할 수 있다. 1. 2. (생략) ② <u>외국인환자 사전·사후관리를</u> 하는 자 및 국외에 있는 의료인의 환자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의료법」 제34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③ <u>외국인환자 사전·사후관리의</u> 방법과 절차 및 시설·장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u><신설></u>	-----<u>외국인환자 사전·사후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외국인환자 비대면 협진”이라 한다)</u>-----. 1. 2. (현행과 같음) ② <u>외국인환자 비대면 협진을</u>----- -----. ③ <u>외국인환자 비대면 협진</u>----- -----. <u>제16조의2(외국인환자 비대면 진료) ①</u> <u>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의 개설자 및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사람에 한정한다)는 유선·무선·화상통신,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외국인환자에 대한 사전·사후관리를 위하여 지속적 관찰, 상담·교육, 진단 및 처방(이하 “외국인환자 비대면 진료”라 한다)을 할 수 있다.</u> ② 「의료법」 제34조의2제4항에도 불구하고 <u>외국인환자 비대면 진료는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다.</u>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u>외국인환자 비대면 진료를 위하여 「의료법」 제34</u>

현 행	개 정 안
제24조(등록의 취소) ① 시·도지사는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또는 외국 인환자 유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제1 항·제2항에 따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u>조의7(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은 제외한다)에 따른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에는 의약품 처방에 필요한 기능을 포함할 수 있다.</u> <u>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구축·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u> <u>⑤ 제4항에 따라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탁받은 전문기관의 준수사항 등에 대하여는 「의료법」 제34조의7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8항을 준용한다.</u> <u>⑥ 외국인환자 비대면 진료를 하는 자는 이 법 및 환자 거주국 현지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u> <u>⑦ 외국인환자 비대면 진료의 세부적인 실시 절차 및 방법, 제3항에 따른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u> 제24조(등록의 취소) ① ----- ----- ----- ----- ----- -----.

현행	개정안
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7. (생략) 8. 제16조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 등을 위반하여 <u>외국인환자 사전·사후관리를 한 경우</u> 9. 10. (생략) ②·③ (생략)	-----. 1. ~ 7. (현행과 같음) 8. 제16조 및 제16조의2----- -----<u>외국인환자 비대면 협진 및 비대면진료</u>----- 9. 10.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검토의견

□ 개정안은 현행법 제16조¹⁷⁾에 따른 ‘외국인환자 사전·사후관리’의 용어를 ‘외국인환자 비대면 협진’으로 변경하면서,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인이 외국인환자에 대한 사전·사후관리를 위하여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며 지속적 관찰, 상담·교육, 진단 및 처방하는 ‘외국인환자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 2025년 12월 법률 제21238호로 공포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에서는 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특정한 요건 하에서

17)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외국인환자 사전·사후관리) ① 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의 개설자 및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사람에 한정한다)는 「의료법」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국외에 있는 의료인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외국인환자 사전·사후관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의료지식이나 기술 지원

2. 환자의 건강 또는 질병에 대한 상담·교육

② 외국인환자 사전·사후관리를 하는 자 및 국외에 있는 의료인의 환자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의료법」 제34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③ 외국인환자 사전·사후관리의 방법과 절차 및 시설·장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의료기관 밖의 환자를 대상으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진료로서 지속적 관찰, 상담·교육, 진단·처방에 해당하는 진료인 ‘비대면진료’를 행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제34조의2 신설)되었고,¹⁸⁾ 2026년 12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개정안은 현행법 제3조¹⁹⁾에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의료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외국인환자²⁰⁾를 대상으로 하는 비대면진료의 실시

18) 법률 제21238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2025. 12. 23. 공포 2026. 12. 24. 시행>

제34조의2(비대면진료) ① 의료인은 환자를 대면하여 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34조의9까지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대면진료(의료인이 의료기관 밖에 있는 환자에 대하여 유무선 통신, 화상통신,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진료로서 지속적 관찰, 상담 및 교육, 진단 및 처방에 해당하는 진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실시할 수 있다.

1. 환자가 해당 의료기관에서 일정 기간 내에 동일한 증상으로 대면하여 진료받은 기록이 있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환자의 거주지와 의료기관 소재지가 동일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 나. 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등 가목에 따른 동일 지역 밖에서 비대면진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 환자의 경우

③ 제2항제2호의 경우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의료인은 의약품의 종류, 처방 일수 등이 제한된 범위에 서만 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다.

④ 비대면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실시한다. 다만 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교정시설 수용자, 수술 후 경과 관찰이 필요한 환자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다.

⑤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의료인은 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대면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비대면진료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⑥ 비대면진료를 실시한 의료인은 제17조의2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가 지정한 약국에 발송할 수 있다.

⑦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의료인은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료하는 경우와 같은 책임을 진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1. 환자가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의료인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2. 통신 오류 또는 환자가 이용하는 장비의 결함으로 인한 경우
3.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의료인의 문진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자신의 건강상태 등 진료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⑧ 제2항제1호에 따른 일정 기간, 같은 항 제2호가목에 따른 동일 지역의 범위,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환자의 범위, 제3항에 따른 제한된 의약품 처방의 범위, 제4항 단서에 따른 불가피한 경우, 그 밖에 비대면진료의 실시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9)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의료법」을 준용한다.

20)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외국인환자”란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환자를 말한다.

주체와 절차·방법 등을 「의료법」에 따른 비대면진료와 구분하여 별도로 규율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다음 사항이 논의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첫째, 안 제16조의2제1항에서는 외국인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비대면 진료의 목적으로 ‘사전·사후 관리’를 규정하고 있는데,

국내 의료기관 이용 경험이 전혀 없는 외국인환자의 ‘사전 관리’를 위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할 경우 외국인환자의 국내 의료기관 방문을 구축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 둘째, 안 제16조의2제2항에서는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외국인 환자 비대면 진료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이라는 용어가 국내 보건의료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기는 하지만 이를 규정한 입법례는 찾기 어렵고,

「의료법」에서는 의료기관을 크게 의원급 의료기관, 조산원 및 병원급 의료기관의 3종으로 구분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외국인환자 비대면 진료는 「의료법」 제3조제2항21)제1호에 따른

21)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의원
- 나. 치과의원
- 다. 한의원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신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병원
- 나. 치과병원
- 다. 한방병원

의원급 의료기관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셋째, 안 제16조의2제3항이 법률 제21238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제34조의7제1항²²⁾에 따라 구축 예정인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을 외국인환자 비대면 진료에도 활용하도록 하려는 것인지, 또는 명칭은 같더라도 외국인환자 비대면 진료에 특화하여 의약품 처방에 필요한 기능이 포함된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을 별개로 구축·운영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인지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으므로,

개정안에 따른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과 「의료법」에 따른 비대면진료 지원시스템 간의 관계를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넷째, 법률 제21238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제87조의2제2항 제2호에서는 같은 법 제34조의7제4항 및 제6항을 위반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2조제2항제1호의3에서는 같은 법 제34조의7제5항 후단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²³⁾

라.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마. 정신병원

바. 종합병원

22) 법률 제21238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2025. 12. 23. 공포 2026. 12. 24. 시행>

제34조의7(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및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비대면진료를 위하여 비대면진료의 요청 및 실시 등 중개, 환자의 자격 및 진료내역 등의 정보 제공을 위한 전자정보시스템(이하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23) 법률 제21238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2025. 12. 23. 공포 2026. 12. 24. 시행>

제87조의2(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제18조제3항, 제21조의2제5항·제8항, 제23조제3항, 제27조제1항, 제33조제2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만을 말한다)·제8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0항, 제34조의7제4항·제6항, 제34조의9제3항을 위반한 자. 다만, 제12조제3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92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의3. 제34조의7제5항 후단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안 제16조의2제5항은 외국인환자 비대면 진료를 위한 비대면진료지원 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수탁한 전문기관의 준수사항 등에 대하여는 「의료법」 제34조의7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8항²⁴⁾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의 제재에 관하여는 「의료법」과 달리 벌칙이나 과태료 부과 근거가 개정안에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므로,

「의료법」에 따른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이 보유하게 될 정보와 외국인환자 비대면 진료를 위한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이 보유할 정보가 중요성이나 보호가치 등의 측면에서 동등하다면 개정안에도 「의료법」과 마찬가지로 준수사항 미준수에 따른 제재에 관한 사항이 규정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4) 법률 제21238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2025. 12. 23. 공포 2026. 12. 24. 시행>

제34조의7(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및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④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또는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이 보유한 정보의 누출, 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근 권한자의 지정, 방화벽의 설치, 암호화 소프트웨어의 활용,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할 것
2.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또는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운영 업무를 다른 기관에 재위탁하지 아니할 것
3.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또는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이 보유한 정보를 제3자에게 임의로 제공하거나 유출하지 아니할 것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또는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해당 자료를 보유·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또는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에 저장된 정보를 누출·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또는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다. 관계 기관 의견

□ (보건복지부) 수용

- (안 제16조의2: 외국인환자 비대면 진료 제도화) 최근 「의료법」 개정('25. 12월 통과, '26. 12월 시행)으로 국내 비대면 진료가 제도화됨에 따라 외국인환자와 국내 의료인 간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외국인환자 100만명 시대에 국내 체류기간이 짧은 외국인환자에게 비대면 진료를 통한 전문적인 사전·사후 관리를 제공함으로써 한국 의료의 신뢰도와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안 제24조제1항: 사후관리 및 등록취소 규정) 비대면 진료의 절차 및 방법 위반 시 등록취소 등 관리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제도 오남용을 방지하고 외국인환자 유치 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3.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실태조사 근거 신설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종합계획이나 매년 수립하는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의료 해외진출,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신설>	제18조의3(실태조사)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의료 해외진출,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검토의견

- 보건복지부장관은 현행법 제18조에 따라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제1항), 그 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며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함(제3항).²⁵⁾

25)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9조에 따른 정책협의회의 협의를 거칠 수 있다.

② 종합계획에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 및 추진방향
2. 투자재원의 조달 및 활용계획
3. 기반 조성

□ 현행법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의료 해외진출 신고 의료기관의 장,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의 장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²⁶⁾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의 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외에도 종합계획·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한 실태조사가 매년 실시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기초한 정책 입안과 집행이 원활히 이루어지게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의료 해외진출’과 ‘외국인환자 유치’는 각각 신고제와 등록제로 운영되고 있고,²⁷⁾

4. 국제교류 및 협력

5. 국내 보건의료서비스에 미치는 영향 및 외국인환자 권익 보장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6)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협조 요청)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제4조에 따른 의료 해외진출 신고 의료기관의 장,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의 장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27)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료 해외진출의 신고) ① 의료 해외진출을 하려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진료과목별로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를 1명 이상 둘 것. 다만, 진료과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과목이 아닌 경우는 제외한다.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배상공제조합에 가입하였을 것

② 제1항의 의료기관을 제외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및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가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사업실적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면, 시·도지사는 이를 매년 3월 1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규정²⁸⁾하고 있는 등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체계가 이미 갖추어져 있다고 할 측면이 있으며,

그 밖에도 보건복지부장관이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의 수수료 또는 진료비의 부과 실태를 조사·공개할 수 있도록 한 점,²⁹⁾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정책 추진 실태 및 평가 결과와 국내외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관련 현황 등을 포함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한 점³⁰⁾ 등을 고려할 때,

보건복지부장관이 종합계획·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을 것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할 것
3. 국내에 사무소를 설치하였을 것

28)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보고의무) ①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사업실적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전년도 사업실적을 매년 3월 1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9)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과도한 수수료 등의 제한)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의 수수료 또는 진료비의 부과 실태를 조사하여 공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 적정한 수수료율의 범위를 고시하여야 한다.

30)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연차보고)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정책의 추진현황 및 평가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관리
2.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정책 추진 실태 및 평가 결과
3. 국내외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관련 현황

③ 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추가적으로 마련하여야 할 실익이 있을지를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다. 관계 기관 의견

□ (보건복지부) 수용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실태조사를 통하여 확보된 데이터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종합계획’ 수립 시 핵심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고, 정책의 환류 체계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

문 의 처
02)6788-5506